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 관련 신규제도 도입 및 운영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사근로자 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가보훈처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국토교통부 소속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00. ~ 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24”를 “629”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3”을 “59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7,088”을 “7,091”로 하고, 일반직 계 “7,087”을 “7,0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058”을 “7,061”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5년 2월 28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생 략) ③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2명(5급 2명)은 <u>여성가족부</u> 소 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 의해야 한다.	제38조(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 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여성가족부, 1명</u> <u>(5급 1명)은 국토교통부</u> ----- ----. ----- ----- ----- -----.
제43조(한시정원) ① <u>국가유공자</u> <u>에 대한 취업 지원 업무를 추진</u> <u>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u> <u>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u> <u>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u> <u>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u> <u>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u> <u>정원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u> <u>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u> <u>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u> <u>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u> <u>하여 국가보훈처장과 미리 협의</u> <u>해야 한다.</u> ② <u>삭 제</u>	제43조(한시정원) <삭 제>

③ ~ ⑤ (생략)

⑥ 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⑦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감축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6의 정원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⑧ ~ ⑪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 2025년 2월 28일-----

-----.

<삭 제>

⑧ ~ ⑪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4</u>	<u>629</u>	+5
·	·	·	
·	·	·	
일반직 계	<u>617</u>	<u>622</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3</u>	<u>598</u>	+5
·	·	·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088</u>	<u>7,091</u>	+3
·	·	·	
·	·	·	
일반직 계	<u>7,087</u>	<u>7,090</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058</u>	<u>7,061</u>	+3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